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 3. 8. (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 성 원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9년 2월 26일

○ 회부일자: 2019년 2월 27일

3. 제정 이유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교직원·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활동참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5. 검토의견

- 현재 충북은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충북형 마을교육공동체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현재 예산지원과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에는 2017년 31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66억 예산으로 11 시·군 전 지역에서 충북형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충북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충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충북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의미와 철학을 명료화 하고,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사업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실현시켜 나갈 구체적인 교육활동과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7조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안 제8조, 추진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한 안

제10조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체계화와 지원을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의 취지와 조문 구성 및 내용면에서 바람직하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은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공동교육활동인 만큼 유기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 사료됨.